

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. 3. 23 선고 2021가단61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2. 23.

판 결 선 고 2022. 3. 23.

주 문

1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20. 8. 11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. 1. 8. 접수 제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법령의 적용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남요섭

별지